

공

고

◎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9-122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12일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1. 법적근거

-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(이의제기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 대상

| 번호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주소 | 처분금액 | 법령 위반사항 | 광고전화번호 | 광고내용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
| 1 | 공*복 | 690707-1***** |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| 375만원 |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, 제4항, 제6항 | 010-**-05-8292 | 중고차 |
| 2 | 이*중 | 580316-1***** | 경남 통영시 도남로 | 375만원 |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| 055-**-9-9595 | 정육할인 |

3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4. 이의제기기한 : 공고문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

5. 납부기한 : 2019. 12. 23.(월)

6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,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.

- 건명 :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
- 수입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(과태료)
- 산출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
- ※ 체납 시 과태료에 3%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7. 이의제기제출 장소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

【(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, 807호(초량동, KCA빌딩) (☎ 051-967-1206 FAX : 051-967-1208)】